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932

발의연월일: 2020. 9. 16.

발 의 자:김용판·백종헌·송언석

서일준 • 박덕흠 • 하영제

김선교 · 정희용 · 권성동

최춘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공중화장실이 유지·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연 1회의 정기점검과 필요 시 수시점검하도록 되어 있음. 또한, 공중화장 실 내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또는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음.

하지만 늘어나는 몰래카메라 및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 1회의 정기점검과 필요 시 수시점검으로는 한계가 있음. 또한, 공중화 장실의 비상벨 설치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하여 비상 벨 설치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고 설치 후에도 관리 예산 부족으로 실 질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.

이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점검 목적에 범죄 예방 위함을 추가하고 정기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려 함. 또한, 공중 화장실의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중화장실의 범죄 및 긴급 상황을 예방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4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4항"을 "제5항"으로 한다.

④ 공중화장실 설치·관리하는 자는 범죄를 예방하고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비상벨(비상 상황 발생 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)을 설치하여야 한다.

제12조 중 "유지·관리되고"를 "유지·관리 및 범죄 예방이 되고"로, "연 1회"를 "연 2회 이상"으로, "하여야 한다"를 "해야 하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"로한다.

제16조 후단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7조(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)	제7조(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)			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생 략)			
<u> <신 설></u>	④ 공중화장실 설치·관리하는			
	자는 범죄를 예방하고 긴급상			
	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			
	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			
	라 공중화장실 비상벨(비상 상			
	황 발생 시 시설의 관리자 또			
	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			
	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			
	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			
	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)			
	을 설치하여야 한다.			
<u>④</u>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			
<u>⑤</u> 제1항부터 <u>제4항</u> 까지에서	<u>⑥</u> <u>제5항</u>			
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				
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				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				
정한다.				
제12조(시설 점검) 시장・군수・	제12조(시설 점검)			
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				
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				
에 따라 <u>유지·관리되고</u> 있는	<u>유지·관리 및 범죄예방</u>			

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<u>연 1회</u> 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 시점검을 하여야 한다.

제16조(보조금의 지급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・관리 또는 개선 하는 자에 대하여 개선 비용 등의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존 공중화장실등을 개선할 때에는 그 개선 비용의 일부를 우선적으로보조할 수 있다.

	<u>이 되고</u>		- <u>연</u>	2회이	상
		해야 하	며 /	시장 ·	군
	<u>수・구청장은</u>	- 점검	결	과를	행
	<u>정안전부장관</u>	<u></u> 에 게	보.	고하여	야
	한다.				
제	16조(보조금.	의 지급	-) -		
	게 4중].				
	<u>제4항</u> -				